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3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이성권 · 서천호
김기웅 · 권영진 · 김상훈
엄태영 · 이소희 · 이종배
이달희 · 최보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·집행되고 있음.

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).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”을 “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자는 시스템”으로 하고, 제6항(중전의 제5항) 및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를 각각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 한다.

-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2(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29조의2(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<u>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,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	<u>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자는 시스템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규정을 따른다.</u>	<u>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</u>	<u>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-----</u> -----

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.	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